

공 고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21-105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1. 7. 12.

부 산 지 방 우 정 청 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경상남도 창원군 이방면	1	창녕우체국 우편물류과	(055)806-1125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라. 우편환 발행·지급 및 공과금 수납 업무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 우체국의 취급국 전환시 500m 이내 우체국이 없는 경우도 가능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하다. ATM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무상 제공

5. 창구환경 시설

○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1. 7. 12(월) ~ 7. 27(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se>) 정보
마당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1. 7. 28(수) ~ 7. 29(목)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 접수기간은 공고 만료일 다음 업무일부터 진행

나. 장 소 : 창녕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사용허가 승인서(정부청사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해 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 기재),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부산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바. 선정결과는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21. 8. 5.일 공고(예정)한다.
-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아. 선정된 자는 부산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 가. 기본수수료 : 월 625천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은 [붙임7] 참고)
- 다. 우편보조수수료 : 월 200천원
- 라. 금융보조수수료 : 월 300천원
(우편 및 금융 보조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10. 기 타

-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나.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1-559-3121)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처 창녕우체국 우편물류과(☎055-806-11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8] 양식작성)

나. 우편취급국 내부의 ATM기 설치는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3. 자기소개서,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7.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1부
 8. 확인서 양식 1부. 끝.

【붙임 1】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사무실) 소재지	영업종목
	위탁업무 운영에 사용할 사무실 면적	m ² 전화번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체국 창구업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우정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2.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수수료 없음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수탁신청인이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3.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4.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신원보증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2.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위탁계약 체결
신청인		처리기관 (관할우체국)		처리기관 (지방우정청)		처리기관 (지방우정청)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관련)

종류	신 청 자 의 자 격	해당여부
1	• 지방자치단체,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 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	
4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자	
5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	
6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자	
7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8	•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자	
9	•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에 따른 우체국(이하 “우체국”이라 한다), 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 나.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10	• 법 제9조에 따른 위탁업무의 종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1	• 군(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4호에 따라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을 설치하고 그 수취함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 나. 우체국과 우표류의 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우표류를 판매하는 사람	
12	•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3	• 군의 이장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3년 이상 새마을지도자의 경력이 있는 사람	
14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붙임 3】

자 기 소 개 서

			연락처	일반전화 : 휴대전화 :
(사진) (30×38) (스캐너)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직위 (근속년수) (법인의 경우)	(년 월)
	수상경력			
학력				
<경력> 최근 경력부터 기재				
기 간		직 급	경력사항	
< 개인능력 >				
○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제출		
○ 자격증(IT, 기타)		자격증 제출		
○ 최종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제출		
○ 건강진단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제출		
○ 우체국이용도		예금고객등급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제출		
○ 총괄우체국장 추천서		관할 총괄우체국장 추천의 경우에 한함		

*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법인인 경우 지정대리인(위탁업무종사자)이 작성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자기소개서> 성명 :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3매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하게 된 동기
-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제도 이해정도
- 사회봉사정신 및 고객만족 서비스 능력 등

<운영계획서> 성명 :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3매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사업 발전을 위한 마음가짐
- 우정사업 발전의 협조성
- 법령, 제도, 계약내용 준수에 관한 성실성
- 계약 후 우정사업 기여도 향상 가능성 등

【붙임 4】**신 원 보 증 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상기자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업무를 신청함에 있어 본인 등이 그 신원을 보증 하겠으며, 만일 업무수행 중 범한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하여 우체국 또는 우정사업본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증인 등이 이에 대한 일체의 민사상의 책임을 지겠기에 본 보증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신원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 신원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부산지방우정청장 귀하

※ 첨부 : 신원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작성

【붙임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시행령 제7조)

항목	세부 항목	배점	점수내역	비 고
위치적 여 건 (40)	가. 인접 우체국과의 거리	10	3km 이상: 10 2.5km 이상 3km 미만: 8 2km 이상 2.5km 미만: 6 1.5km 이상 2km 미만: 4 1km 이상 1.5km 미만: 2 0.5km 이상 1km 미만: 1 0.5km 미만: 0 특수지역은 별도 평가 (대학교, 대형건물(연면적 33천㎡이상) 구내, 병원 등은 별도평가하며 0.5km 미만 시 1점)	지도상 직선 거리 (재선정시 0.5km 미만 중 0.45km 이상은 1점 부여) (측정오차 ±50m 인정)
	나. 신청장소 주변여건	10	복합지역(빌딩, 상가, 주거): 10 상가지역: 8 집단주거지역(5천 세대 이상): 6 빌딩구 내: 4 주거지역: 2	인근지역 종합판단
	다. 이용 가능 인구수	10	45,000명 이상 : 10 40,000명 이상 : 9 35,000명 이상 : 8 30,000명 이상 : 7 25,000명 이상 : 6 20,000명 이상 : 5 15,000명 이상 : 4 10,000명 이상 : 3 5,000명 이상 : 2 5,000명 미만 : 1	최근통계 (인구+ 사업장종사원)
	라. 교통 여건	10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변에 인접한 정도: 2~4 (설치장소(우편취급국)를 기준으로 도로변 4점, 50m이내 3점, 50m이상 2점) 이용고객과 우편운송차량의 진출입 및 주차차의 편리성: 2~4 (설치장소 관리 건물의 주차공간 2대이상 4점, 1대 3점, 없음 2점) 위치식별의 용이성: 1~2 (왕복 2차선 이상 도로변에 우편취급국 출입구가 보임 2점 안보임 1점)	이용고객 및 우편물 운송의 편리성 (3개 항목을 모두 평가 후 점수합산)
사무실 요 건 (30)	가. 이용 편의성	10	지상 1층: 10 지상 2층: 7 지하 1층: 4 지상 3층(승강기를 설치한 경우): 1 지하 2층 이하 및 지상 3층 이상: 0	
	나. 사무실 면적의 적정도	10	45㎡ 이상: 10 40㎡ 이상 45㎡ 미만: 8 35㎡ 이상 40㎡ 미만: 6 30㎡ 이상 35㎡ 미만: 4 25㎡ 이상 30㎡ 미만: 2 25㎡ 미만: 0	전용면적 (사무실과 분리된 화장실 창고등은 제외하고, 전용면적 계산방법은 내법 으로 한다)
	다. 건물의 소유 상태	10	본인 건물: 10 임차 건물이나 가족 소유 건물: 5	공동지분 계산 : 5점+5점*지분율 (소수점 둘째 자리 절사)
업무 수행 능력(30)		30	우정사업 이해도, 동종·유사 공공서비스 근무 경력, 고객만족 서비스 능력, 우정사업 발전의 협동성, 성실성, 발전성 등을 종합 평가	선정위원회 평가
합 계		100		

【붙임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 간판은 반드시 재질과 표기내용을 CI규격에 맞게 설치

* 점두간판 표기 예시(“국명”은 작게, “우편취급국”은 크게)

2. 게시물 부착

- 필수 : 업무위탁증서, 우편요금표, 창구이용 시간표
- 기타 : 국정홍보, 우정사업 홍보, 상품안내 등을 목적으로 배포한 포스터 등

* 모든 게시물은 액자, 프레임을 활용하고, 규격 및 모양 등을 통일하여 품위 있게 게시

3.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등은 본부에서 제공하는 창구디자인 표준안을 참고하여 공간 디자인 구성

* 우편창구 높이 표준 규격 : 85cm

- 이미지월은 쾌적한 창구환경을 위하여 설치하며, 이미지월 뒤쪽에 수납장을 설치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4. 공중실

- 공중실이 대부분 협소하므로 불필요한 시설/물품의 방치를 지양, 최소한의 업무 용도(우표접부, 소포포장 등에 필요한 필연대)만 설치하고 고객편의 공간으로 제공
- 실내 도색과 조명도를 밝게 하며 쾌적한 분위기 조성
 - 공중실 조도는 가급적 500룩스 이상으로 하고, 실내전반에 균등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설치
- 공중실 공간은 이용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출입구에서 창구 카운터까지 3m이상 되도록 권장

5. 현업실 정리정돈

- 우편자루(트레이) 등 업무시설은 고객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정돈
- 카운터 위에는 고객 필요용품만 비치, 장표류 등은 보이지 않게 수납비치

창구디자인 표준(안)

[illegible]

【붙임 7】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1-14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우편취급국 우편 및 금융업무 위탁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6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1. 우편창구업무

대 상 업 무 (유료우편물에 한함)	위탁 수수료
1. 기본수수료	매월 625,000원
2. 국내등기통상우편물	월 접수물량에 따라 지급
가. 월 접수 1통부터 1,8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50 상당액
나. 월 접수 1,801통부터 6,0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23 상당액
다. 월 접수 6,001통부터 9,0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5 상당액
라. 월 접수 9,001통부터 18,0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2 상당액
마. 월 접수 18,001통 이상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0.5 상당액
2-1. 국내준등기통상우편물	월 접수물량에 따라 지급
가. 월 접수 1통부터 1,800통까지	준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50 상당액
나. 월 접수 1,801통부터 6,000통까지	준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23 상당액
다. 월 접수 6,001통부터 9,000통까지	준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5 상당액
라. 월 접수 9,001통부터 18,000통까지	준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2 상당액
마. 월 접수 18,001통 이상	준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0.5 상당액
3. 국내등기소포우편물	수납금액의 100분의 16 상당액 - 우체국소핑 소포요금 포함
4. 국제특급(EMS)우편물	
가. 창구접수	수납금액의 100분의 15 상당액
나. 계약요금제(K-packet 포함)	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
5. 우표류	
가. 월 접수 50만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5 상당액
나. 월 접수 50만원 초과분부터 100만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다. 월 접수 100만원 초과분부터 1,000만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
라. 월 접수 1,000만원 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 100분의 3 상당액

대 상 업 무 (유료우편물에 한함)	위탁 수수료
6. 일반우편물 등	해당국 수납금액 중 위 2.~5. 제외 (국내/국제우편, 부가수수료 포함)
가. 월 접수 300만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8 상당액
나. 월 접수 300만원 초과분부터 1,000만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다. 월 접수 1,000만원 초과분부터 3,000만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
라. 월 접수 3,000만원 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 100분의 0.5 상당액

- * 기본수수료: 업무일과 취급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접수 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방우정청장이 판단한 경우 전액 지급 가능
- * 등기취급수수료: 국내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기준
- * 수납금액: 우표로 납부·접부된 우편요금 및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 다만, 일반통상 인터넷우표로 접부된 우편요금은 수납금액에 포함

2. 금융업무

대 상 업 무	위탁 수수료
1. 우편환	월 1통 이상 접수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가. 우편환 발행	우편환요금 수납액(온라인환의 경우 전신요금 제외)의 100분의 80상당액
나. 우편환 지급	건당 100원
2. 국고금 및 공과금 수납	건당 90원
3. 수입인지 판매	4%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가. 농어촌지역 전환 대상국

- 1) 우편보조수수료 : 매월 200,000원
- 2) 금융보조수수료 : 매월 300,000원(현금입출금기를 설치한 경우)

- * 농어촌지역 전환 대상국 : 면지역 소재 우체국에서 전환되는 우편취급국 중 지방우정청에서 대상국으로 선정한 국(지방자치단체, 법인 제외)
- * 농어촌지역 전환 대상국이 계약기간 종료 시 또는 수탁자 변경 사유 발생 시 지방우정청에서는 우편물량, 수수료 등을 검토하여 농어촌지역 전환 대상국 재선정 여부 결정

부 칙

1. 이 고시는 2021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농어촌지역 전환 대상국 적용례)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2020년도 농어촌지역

전환 시범대상국으로 선정된 국은 계약기간 종료 후 농어촌지역 전환 대상국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1월 1일부터 이 고시 시행일 전까지 면지역 소재 우체국에서 우편취급국으로 전환이 진행된 국은 농어촌지역 전환 대상국으로 선정하여 그에 따른 수수료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 시작일로 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재검토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8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붙임 8】

확 인 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시 □□동 소재 우편취급국 운영에 대한 우체국창구업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하면서 공고에 따라 수탁대상자 선정이 ◎◎우체국 업무종료(폐국)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 명 (인)

부산지방우정청장 귀하